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306

제 안 일 자 : 2025년 12월 17일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3조제1항의 조문체계를 현행과 연계하여 일부 정비하고, 안 제25조제1항은 심리적·정신적 피해자의 경우 기간에 제한없이 '피해 신고'토록 하고 있으나 '피해 신고'는 실무상 사후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심리적·정신적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'신고'보다는 심리회복 지원을 직접적으로 '신청'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여겨짐.

○ 안 제47조의2 경우도 심리지원 관련 조사 대상을 객관적 판단이 애매한 '심리적·정신적 피해상황'보다는 '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'으로 현실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2. 주요골자

가. 심리회복을 재난 발생 후 노력대상에 추가하여 시의 책무를 보완함(안 제3조제1항).

나. 심리적·정신적 피해자의 경우 기간에 제한없이 피해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을 ‘신고’보다는 심리회복 지원을 직접적으로 ‘신청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함(안 제25조제1항).

다. 심리지원 관련 조사 대상을 ‘심리적·정신적 피해상황’에서 ‘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’으로 수정함(안 제47조의2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 중 “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”을 “시민의 생활안정과 심리회복 및 재난 복구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5조제1항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기간에 제한 없이 심리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7조의2의 제목 “(심리지원)”을 “(심리회복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심리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상황”을 “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”으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시의 책무)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재난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3조(시의 책무) ① ----------, ---------- **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** ----------. **특히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심리 회복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**	제3조(시의 책무)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---------- **시민의 생활안정과 심리회복 및 재난 복구를**----------. **<후단 삭제>**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
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신고 등)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신고 등) ① ----------한다. **다만, 심리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간에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다.**	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신고 등)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**하며,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기간에 제한 없이 심리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**

		다.<단서 삭제>
②·③ (생 략) <신 설>	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47조의2(**심리 지원**)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재난으로 인한 **심리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상황**을 조사하여야 한다. **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**	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 제47조의2(**심리회복 지원**) ① ---------- **-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** ----------. **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**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”을 “시민의 생활안정과 심리회복 및 재난 복구를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기간에 제한 없이 심리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심리회복 지원)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의 책무)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의 책무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시민의 생활안정과 심리회복 및 재난 복구를---------- ---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하며,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기간에 제한 없이 심리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7조의2(심리 지원)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